

Vivid X Cassiopeia Model United Nations CHAIR REPORT

Committee
유엔 총회

AGENDA
분쟁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논의

위원회 소개

유엔 총회는 유엔의 주요 심의기구입니다. 회원국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모이게 되며, 모든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유엔 총회는 다른 유엔 내 기관의 모든 목표를 위한 길에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회원국을 선출하며, 유엔 조직의 운영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유엔은 총회 내에 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총회는 제 1 위원회부터 제 6 위원회와 더불어 특별 정치 위원회까지 총 7 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제 1 위원회는 군사 및 정치 조정에 관해 논의하며, 제 2 위원회는 경제 재정에 대한 제반 업무, 제 3 위원회는 국제 사회의 사회와 문화적 안건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 4 위원회는 자치 정부가 아닌 나라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고 있고, 제 5 위원회는 행정 및 예산 업무, 제 6 위원회는 법률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 많은 결의안이 제출되며 채택되는데, 세계인권선언이 대표적인 결의안입니다. 이번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에서 유엔 총회는 분쟁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논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오늘날 분쟁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어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하게 됩니다.

의제 선정 배경 및 토의 제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더 이상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만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의 과학 기술은 상대방을 어떻게 더 쉽게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현재에도 그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사용에 대하여 예방방법 및 통제방법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국들은 본 회의에서 단순히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해서는 안되며 현존하고 있는 단체와 조약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존폐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례를 분석해 효과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보아야 하며 단순한 예방책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규제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서 확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더 나아가 규모 축소를 추진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9년 기준 대량살상무기 보유국 현황)

의제 관련 용어 설명 및 역사적 사용

대량살상무기

대량 파괴 무기라고도 불리며, 화학, 생물, 핵, 방사능 무기 등 단기간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를 총칭합니다.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역사적 사용

바이오테러리즘, 또는 생화학전에 사용되는 생화학 무기는 현재 개발된 것과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합해 1,200여 종이 존재합니다. 생화학 무기의 경우, 가성비가 뛰어나고 대량학살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도 M143 자탄 (탄저균 포자), E48 자탄 (돼지 브루셀라, 탄저균, 보툴리누스) 등 생화학 무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침략 전투

1672년, 네덜란드 침략 전투 중 흐로닝겐 공성전에서 윈스터의 사제가 폭약이나 소이탄에 벨라돈나 독을 첨가하여 사용. 벨라 흡수로 심한 정신 착란과 환각 발생.

이탈리아 독립전쟁 중 화학무기 사용

1935~1936년, 이탈리아군이 에티오피아군에게 최루가스 및 겨자가스 사용

증일전쟁 중 화학무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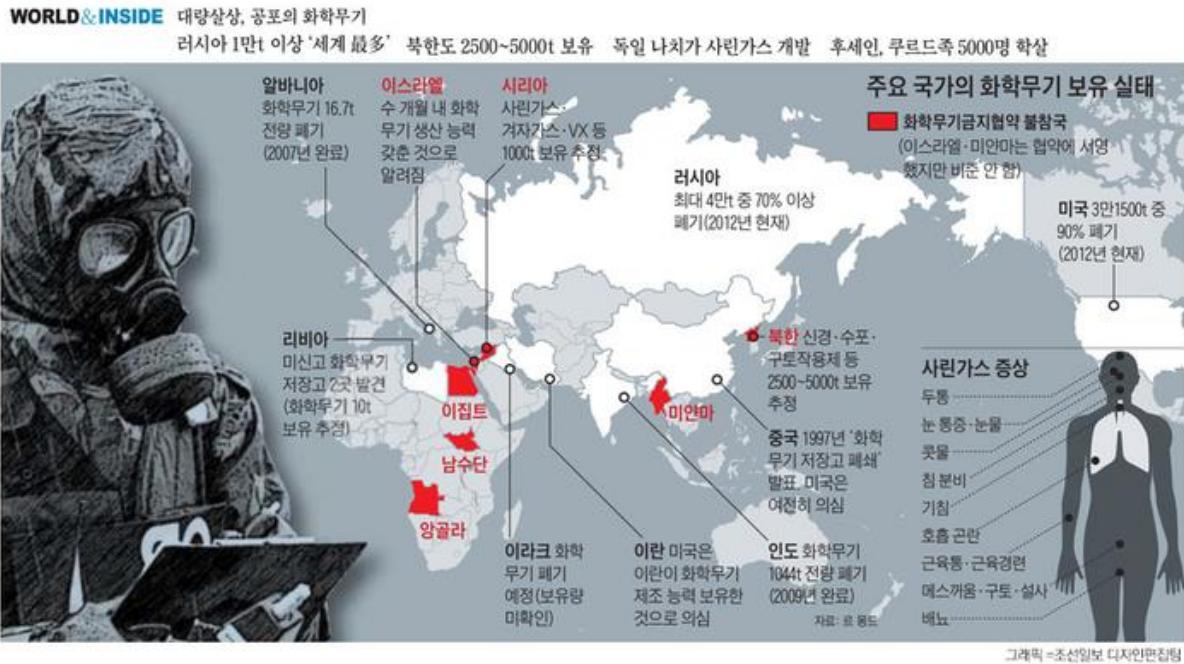
1937~1942 년, 일본군이 중국군에게 수포가스 사용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1955 년 3 월 20 일, 일본의 종교 단체인 옴진리교가 일으킨 도쿄 지하철 테러. 도쿄 메트로 내 5 편성의 지하철 차내에서 화학무로 사용되는 신경 가스 사린 발포, 승객과 역무원 등 12 명 사망, 5,500 여 명 중경상 발생.

이란-이라크 8 년전쟁 중 화학무기 사용

1980~1988 년, 이라크군이 이란군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5 만여 명의 이란 군 사상자 발생.



핵무기에 대한 역사적 사용

핵무기의 사용은 전술핵과 전략핵으로 나뉘는데 전술핵은 킬로 톤 이내의 위력을 가진 핵폭탄급 무기이고, 전략핵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이 장거리의 영토를 파괴할 목적을 가진 핵무기입니다. 역사상 핵무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단 두 번뿐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핵무기의 사용

1945 년 8 월 6 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폭탄 '리틀 보이' 투하.

1945 년 8 월 9 일,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인 '팻 맨' 투하.

의제 관련 용어설명

소이탄

화염이나 고열로 사람이나 건조물 등을 살상 및 파괴하는 폭탄이나 포탄 (탄환류)

벨라돈나 독

벨라돈나 풀에서 섬망이나 환각 상태를 유발하는 물질을 포함한 벨라돈나 독을 추출한 것

루이사이트

한때 미국과 일본에서 화학 무기로서 수포작용제와 허파 자극제로 제조되었던 독가스의 일종

수포 가스

생물의 표피 및 피부에 가스가 닿을 경우 거대한 수포를 일으켜 이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스

사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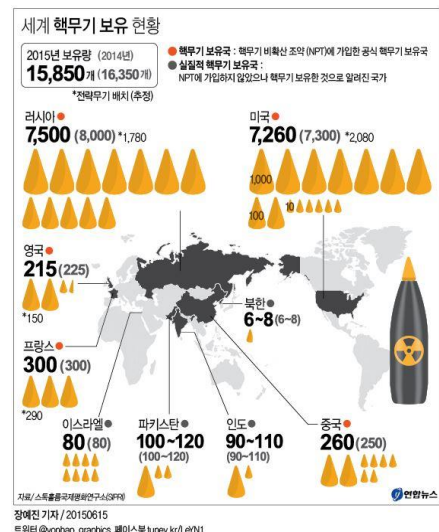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합물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사린을 이용한 화학가스

의제 관련 현황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약의 성립과정

국제사회는 1675년 화학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최초의 조약 (French - German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간 화학무기의 일종인 독성 탄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협정으로 그 후 1874년 브뤼셀 협약, 1899년 헤이그 협정 등 기존의 협약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제 1차 세계대전에서는 화학무기가 대거 이용되었고 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1925년 제네바 의정서를 체결하여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정서는 한계점은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할 뿐,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소유 등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 논의에 가려져 있던 화학무기가



재조명 받으면서 1971 년 생물 및 독성 무기 협약이 먼저 체결하였고, 그 후 1992 년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미국, 러시아 등 가입국의 경우는 현재 화학무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

미국은 제 1,2 차 세계 대전과 걸프전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미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체결하였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원칙이 들어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과 1715 를 도출해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함께 2005 년 10 월 국제해사기구의 해상 불법행위억제협약 개정안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 1540 을 2004 년 4 월 28 일 체결하였습니다. 결의안 1540 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였고 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국제법 체제와 별도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것에 강제성을 부여하였고 1 년 뒤 안보리 결의안 1718 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에 의의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해상 불법행위억제협약을 개정하는 등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선박을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장비, 기술 등이 운반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였고, 대량살상무기의 해상수송 저지를 위한 국제법적인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의심 선박에 대하여 제 3 국의 승선 검색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 년 8 월 21 일 오전 3 시경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의 교외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화학무기는 맹독성 신경가스 중 하나인 사린 가스로 추정되고 이런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해, 1300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2 년 12 월 23 일에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을 살상한 시리아 정부군이 지속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연합 화학무기 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경우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사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며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시리아 공습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013 년 지속되는 미국의 공습과 러시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은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가입하고, 화학무기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화학무기를 폐지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반군을 상대로 최소 8 차례 화학무기인 염소가스를 사용하였고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해 최소 9 명의 시리아 주민이 다치고 200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4 월 4 일에도 시리아 정부군은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리아 북부 이德利브 주 칸세이칸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어린이 11 명을 포함해서 최소 민간인 58 명이 사망했고 일각에서는 화학무기의 2 차적인 피해로 사망자가 100 명을 넘겼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권은 화학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왈리드 무알림 시리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은 주민과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없다. 또한, 화학무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는 이런 시리아 정부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반군이 통제하는 화학무기 저장소에 폭탄이 떨어져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관측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4 일 새벽 칸샤이쿤 상공에 시리아의 수호이-22 전투기가 선회했고, 이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이 터지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이 대두되는 시점, 미국 정부는 화학무기 개발을 주도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정부기관의 직원 271 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였습니다. 먼저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자들이 모두 시리아 과학연구조사센터 직원들이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위한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서 제재를 가하였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제재 수단으로 미국 여러 은행과 사업체는 이들과의 사업 교류가 전면 중단되었고, 이들의 자산 또한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하였습니다. 4월 7일 새벽, 미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리아 공군과 보급시설에 공습을 가하였고 공습 후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 사용과 확산 억제에 대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며 시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사용은 프랑스의 즉각 대응을 부를 것이라며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제 관련 국제기구

화학무기 금지기구

1997년 4월 29일 화학무기 금지조약의 발효와 함께, 화학무기 금지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평화적 연구 목적을 제외한 화학무기의 사용, 개발, 생산, 보유 및 이전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룬 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화학무기 금지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시찰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체결국가 65개국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제 핵실험 감시체제를 구동하고, 자료센터를 구축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효과적 성취를 위한 운영 방안을 생산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이외에 국제탐지체계를 이용하여 핵실험 여부를 찾아 내며, 현장을 시찰하는 일도 진행합니다.

의제 관련 협약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일명 화학무기 금지조약이라 불리는 이 협약은 걸프 전쟁을 계기로 1993년 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조인되었으며, 1997년 4월 29일 65개국이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약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이 불가하고,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2007 년까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물무기 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최초의 특정 대량살상무기 금지 조약으로, 1971 년 12 월 16 일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로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 채택되었고, 1972 년 4 월 워싱턴, 모스크바, 런던에서 각각 서명한 뒤 1975 년 3 월 26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협약은 다자간 군축, 비확산 조약으로, 생물, 독소무기 생산, 비축, 개발을 금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조약

정식 명칭은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관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68 년 7 월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었고, 1970 년 3 월 5 일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러시아를 주도로 하여 성립되었고,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 개 국의 핵무기 독점 보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의 5 개의 국을 제외한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5 개 국은 타 국에게 핵무기, 기폭 장치의 이양이 불가하며, 가입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87 년 4 월 16 일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서방 7 개국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로, 핵,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과 달리 국제적인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체도 아니지만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해서 회원국이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합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2003 년 6 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발족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추진된 대량살상무기 반 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 구상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공유, 합동 작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구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국가 현황 및 입장

상임이사국

중국

중국은 핵확산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 인정하는 핵 보유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있으나 스톡홀름의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16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그 규모는 세계 4위 수준이며 2015년 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화학무기나 생물무기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나 직간접적으로 개발하거나 타 국가에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1998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자 2013년 북한으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16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류결일 중국 상임대표는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정치외교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지역 열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또한 핵확산방지조약이 인정하는 핵 보유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톡홀름의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16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그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제한된 경우에 핵실험을 허용하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artial Nuclear Ban Treaty)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에는 서명하였습니다. 19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반핵(反核) 시위가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정부 또한 핵무기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의 배후를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리아의 화학전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영국 또한 핵확산방지조약이 인정하는 핵 보유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톡홀름의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16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그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차 대전에서의 사용을 시작으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 수단의 전시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인 1930 년대에도 꾸준히 화학무기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신경 작용제 VX 또한 1952 년 영국 최대 화학기업인 제국화학산업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자 VX 의 상업적 연구와 사용을 전면 중단했으나 1961 년 VX 의 제조법을 미국으로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미국 또한 핵확산방지조약이 인정하는 핵 보유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톡홀름의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16 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그 총 규모는 2 위, 실전배치 수는 1 위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최근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리아 과학연구리서치센터 소속 직원 271 명의 명단 공개는 물론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2005 년, 2016 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를 이은 세 번째 제재입니다.

러시아

마지막으로 러시아 또한 핵확산방지조약이 인정하는 핵 보유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톡홀름의 국제 평화 연구소의 2016 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그 규모는 세계 1 위, 실전배치 수는 2 위입니다.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있었던 시리아의 화학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유엔 기구에 요청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알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화학무기 사용 책임을 지우려는 도발들이 목격되고 있다며 그 책임이 결코 시리아 정부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

시리아

시리아는 1967 년 이스라엘과의 제 3 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대응책과 억제력 마련을 위해 1970 년대부터 화학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키푸르 전쟁 전인 1973 년에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화학 무기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1980 년대를 시작으로

시리아 자국 내에서 화학 무기를 생산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북한과 시리아가 연합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협력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2012년 7월, 시리아는 화학 무기 보유를 인정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가우타¹ 공습에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및 미국 행정부에서는 협상을 통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를 대량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의 중재에 따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함으로써 화학 무기 사용 종결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영토 내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리아 북부 이дли브 주에 행해진 공습에서는 사린 가스로 추정되는 화학 가스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조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력한 혐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시리아 정부 측에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정치적, 외교적 분야에서 상대국보다 우위를 점령하고 위해 핵 개발을 시작하였고, 1998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 중 한 국가입니다. 핵실험을 성공한 후 대량살상무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체결에 대해 지지를 하며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처 및 한계점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조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조약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정부군은 북한과 협력하여 민간인, 반군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일종인 생화학무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현존하고 있는 조약의 한계점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먼저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경우 가입국이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협약의 적용 범위와 제재 대상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자간 군축 조약으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미비하여 그 효력을 발휘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참가국의 공해상에서 단속을 벌이는 것도

¹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적 행위와 같이 국제법이 지정한 특정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조업이나 해양조사, 정보수집, 오염, 선전활동, 군사훈련, 항공기 이착륙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를 입히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조약의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경우 체제의 참가국의 자발적인 수출을 금지하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이행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은 이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의 운송,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운송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무기가 실제 해상을 통해 운송되더라도 국제법상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선 통제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래의 시리아 정부군의 생화학무기 사용과 같은 사건을 막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조약과 협약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예측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조약과 협약들이 이에 가입하지 않은 비가입국에 대한 규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국제법 중 조약에 대해서 조약 비가입국은 조약에 대한 규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조약가입국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약 가입국과 비가입국을 포괄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부터 수송을 포함한 확산 전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존 규제 방법들의 실효성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규제 체제의 대부분은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제 범위와 제재사항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조약을 강화하여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약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예상됩니다.

출처

“기능과 권한” 국제연합, 2017.06.04

“핵비확산조약 40 주년, 성과와 한계”, 데일리 NK, 2008.06.30

이신우, “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실요성 유지방안”, 2004.05.02

김현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정철호, “NPT 有用性한계의 극복방향 미국의 인도 핵무기용인과 NPT 파급영향”, 세종연구소, 2011.08.31